

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

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당) ① 오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·편찬·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